

부산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32784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담당변호사 최병주

피고1. B

2. C

변론 종결2021. 12. 16.

판결 선고2022. 1. 13.

주 문

1. 별지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9. 5.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하고,

나. 피고 B은 D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 5. 23. 접수 제130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2019. 10. 14. 접수 제247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D 사이에 2019. 5.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2,428,66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28,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청구취지 등기의 표시에 오기가 있어 바로잡았음).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①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1412 구상금 등 사건에서 2012. 7. 12.

'134,301,82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043823 구상금 사건에서 2013. 5. 14. '8,639,38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9. 3. 30.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 자녀인 D, F, G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상속인들은 2019. 5. 21. 망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 5. 23. 접수

제130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9. 10. 11. 증여를 원인으로 D의 배우자인 피고 C 앞으로 같은 등기소 2019. 10. 14. 접수 제483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2부동산은 무허가 건물이다.

라.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할 당시 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분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둘이켜 이 사건에서, 채무초과 상태인 D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그 당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나아가 수익자와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D과 피고 사이에 2019. 5. 21.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중 D의 상속분인 2/9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인들이 고령인 피고 B의 노후 생활비를 대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고, 그 후 피고 B이 D의 사업 실패로 고통받은 피고 C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게 된 것일뿐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선의의 항변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D에게, 피고 C은 피고 B에게 각 자신들 앞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2부동산은 무허가 건물로서 원물반환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부동산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1. 4. 2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2부동산의 가액은 10,929,000원으로서 그 중 D의 상속분에 대한 가액은 2,428,666원($=10,929,000\text{원} \times 2/9$)이고,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같은 가격일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28,66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오규희

별지